

「 2019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례집**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일러두기

1. 법제처는 2014년부터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규칙을 정비할 때, 법제처의 법제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발굴하여 정비안을 마련·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자치법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법제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조례를 검토하여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과제 1만 3천여 건을 발굴하여 그 정비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규칙 2만 5천여 건을 검토하여 정비과제 4천 6백여 건을 발굴하여 그 정비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였습니다.
3. 이 책의 사례는 2019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을 통하여 발굴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정비과제 중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거나 국법체계와의 관계에서 정비가 필요한 사례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중요 사례를 선정하여 유형별(① 상위법령 위반, ②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③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로 나누어 정리한 것입니다.
4. 이 책의 사례에 해당하는 자치법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해당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치법규의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제 I 장 · 상위법령 위반

1 하수도 사용료 등 가산금 제도 개선	008
2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확보 절차 개선	012
3 귀농·귀촌자 지원금 환수 절차 개선	017
4 임의적 과태료 부과 처분 유예 개선	021
5 지방세입징수 보고서 제출 절차 개선	025
6 지방자치단체의 의안발의 요건 개선	027
7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발령 기준 개선	029
8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	032
9 지방세 세무조사 재조사 기준 개선	035
10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개선	038
11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개선	040
12 지방세 고액·상습채납자의 명단공개 절차 개선	043
13 하수도 배수설비 공사대행업자의 책임범위 개선	046
14 지방인사위원회 서면심의·의결 사항 개선	049
15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기준 개선	052
16 공유재산 기부채납 제출 서류 개선	055
17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범위 개선	057
18 자체감사 자료 제출요구 대상 개선	060
19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 개선	063

제 II 장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1 행정재산의 원상복구 절차 개선	068
2 법령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개선	072
3 행정재산 관리위탁 수탁자의 손해배상 범위 개선	075
4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해지 사유 개선	078
5 불합리한 약관 개선	081
6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보증금 예치제도 개선	0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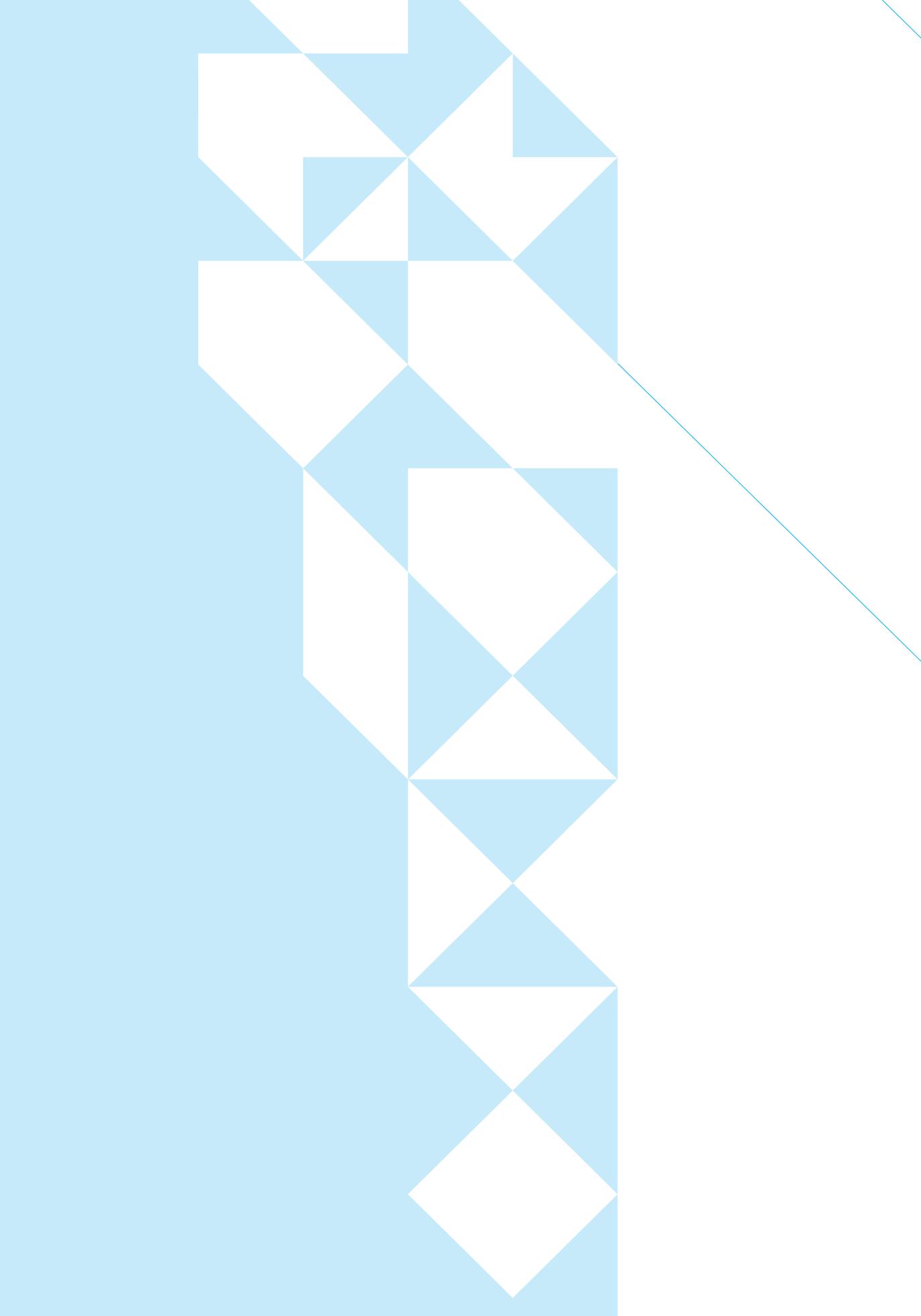
7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절차 개선	090
8 지방공무원 징계사실 공개 개선	092
9 주차장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094
10 지방세 세무조사 압수·수색 절차 개선	096
11 행정재산 관리위탁 수탁자의 보험가입의무 개선	099
12 소송사무 공무원의 책임 범위 개선	102
13 법령의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선	107

제 표 장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1 지방공무원 소송사무 처리 절차 개선	112
2 장애인 등급제 개선	116
3 지방공기업의 중요자산의 취득·처분 제도 개선	120
4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 개선	122
5 지방공무원 평정을 위한 자격제도 개선	130
6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지원제도 개선	134
7 지방보조사업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136
8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촉규정 개선	138
9 정책실명제 운영 규정 개선	141
10 지방공무원 징계의결 등 면제 사유 개선	143
11 도로점용허가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개선	148
12 공유재산 관련 감정평가 업무 주체 개선	151
13 교육환경보호구역 명칭 개선	156

부 록

1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소개	162
2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소개	163
3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 소개	166
4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167



제 I 장 상위법령 위반

(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 1 하수도 사용료 등 가산금 제도 개선
- 2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확보 절차 개선
- 3 귀농·귀촌자 지원금 환수 절차 개선
- 4 임의적 과태료 부과 처분 유예 개선
- 5 지방세입징수 보고서 제출 절차 개선



- 6 지방자치단체의 의안발의 요건 개선
- 7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발령 기준 개선
- 8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
- 9 지방세 세무조사 재조사 기준 개선
- 10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개선



- 11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개선
- 12 지방세 고액·상습채납자의 명단공개 절차 개선
- 13 하수도 배수설비 공사대행업자의 책임범위 개선
- 14 지방인사위원회 서면심의·의결 사항 개선
- 15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기준 개선



- 16 공유재산 기부채납 제출 서류 개선
- 17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범위 개선
- 18 자체감사 자료 제출요구 대상 개선
- 19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 개선

1 하수도 사용료 등 가산금 제도 개선

예시

[□□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가산금 및 납입독촉) ① 사용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3조에 따라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군수에게 납기연장 승인을 받은 공공기관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에게 대한 사용료의 경우에는 상수도사용료 독촉장과 동시에 발부하고, 상수도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점용료 및 부담금의 독촉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입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1 문제점

- 가산금은 금전납부의무를 지체한 경우에 이를 강제징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하수도법」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또한, 「하수도법」 제73조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이는 체납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보아야지 「지방세 기본법」상 실제적인 사항을 준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법제처 2012. 9. 3. 의견제시 12-0271 참조).
- 그런데, 해당 규칙에서는 법률에 근거 없이 가산금 부과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하수도법」 등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

2 개선방안

- 가산금 부과 절차에 관한 내용 삭제. 이 경우 시행규칙의 상위 자치법규인 「□□군 하수도」의 가산금 근거도 함께 정비 필요

관련법령

「하수도법」

제73조 (강제징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관련 의견제시사례 (법제처 2012. 9. 3. 의견제시 12-0271)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용요금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 시 「지방세기본법」 제59조에 따른 가산금과 동일하게 책정하여 징수해야 하는지 여부(「정선군 수도급수조례」 관련)

[질의요지]

「지방공기업법」 제22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직영기업의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의 가산금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9조에서는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도사용요금의 가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제36조를 개정함에 있어 「지방세기본법」 제59조와 동일하게 수도사용요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해야 하는지?

[의견]

「지방공기업법」 제22조제4항에서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한 것은 요금의 징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지방세기본법」 상 가산금 등과 같이 실제적인 사항을 준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제36조를 개정함에 있어 가산금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59조와 반드시 동일하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수도법」 제38조제1항에서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수돗물의 요금 등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수도사업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22조의 요금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는데 「지방공기업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함에 따라, 수도사용요금의 가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제36조를 개정함에 있어 지방세의 가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제59조와 동일하게 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 제22조제4항에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는 의미를 살펴보면, 통상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하여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준용'이라고 하고, 이러한 준용형식 중의 하나로 준용되는 규정이 많거나 일련의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문의 규정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에 따른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예에 따른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 준용조문이 명확히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준용하는 법률과 준용되는 법률 간의 규정대상이나 법적 성격의 차이를 불문하고 모든 내용을 준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는 표현만으로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징수에 관한 모든 규정이 준용된다고 한다면, 같은 법 제65조의 관허사업의 제한과 같이 순수한 의미의 지방세 징수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의 규정까지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준용'이라는 입법 기술을 통하여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1. 1. 13. 회신 해석

10-0446 취지 참조), 준용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령이나 조문의 성격을 구분하여 그 적용되는 조문의 범위를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제36조의 가산금과 관련된 수도사용요금의 성격을 살펴 보면, 수도사용요금과 지방세는 각각 「수도법」·「지방공기업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서 그 존재목적이나 징수를 통한 정책적 효과가 상이한 전혀 별개의 납부의무인바, 「수도법」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납부의무자”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각각의 법률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수도법」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가산금 납부의무가 정하여질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1. 12. 15. 회신 해석11-0637 취지 참조),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는 표현만으로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모든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징수 ‘절차’에 관하여만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라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372 판결례 취지 등 참조)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22조제4항에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한 것은 요금의 징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그 준용 대상에 「지방세기본법」상 가산금 징수 등과 같이 실제적인 사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제36조를 개정함에 있어 반드시 가산금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59조와 동일하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확보 절차 개선

예시1

[□□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용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5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용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받았을 경우
2. 용자금을 용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용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용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예시2

[○○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제9조(환수) 군수는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문제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8호 및 「○○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군수가 주민에 대해서 임차비용을 용자하는 경우 해당 용자금은 「지방재정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해당함.

- 그렇다면 임차비용을 용자받은 주민이 용자금용 용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장(채권과 채무, 제107조부터 제133조까지)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 특히, 채권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고지하고, 이행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며, 독촉 후 독촉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용자금 반환 고지 및 독촉, 강제이행의 청구 등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해당 규칙에서는 별도의 고지 및 독촉 등의 절차 없이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기한 및 절차 등과 달리 규정하고 있음.
- 그 밖에 포상금 반환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채권 확보 절차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야 할 것임.

2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되므로 삭제하거나, 규정하는 경우에도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개선

**관련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삭 제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5.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방재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세입”(歲入)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3. “세출”(歲出)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한다.
4.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5.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

제109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110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태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
2. 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3. 증권으로 된 채권
4.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
5.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예탁한 예금에 관한 채권
6. 보관금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7.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8.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
9. 외국의 대사·공사 그 밖에 외교관이나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한 채권

제111조(납부의 고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이행의 청구를 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채권의 금액·이행기한 그 밖의 내용이 법령 또는 계약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고납부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2조(독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1조에 규정된 납부의 고지로 지정하는 기한(납부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행기를 말한다)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기한 만료 후에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하 “독촉기한”이라 한다)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113조(강제이행의 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를 경과한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한 후 독촉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담보부채권(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의 처분, 경매 그 밖의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이행 또는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2.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청구절차의 이행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소송절차에 의한 이행의 청구

3 귀농·귀촌자 지원금 환수 절차 개선

예시

[□□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지원금의 회수)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반환 하여야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조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을 거쳐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결정 할 수 있다.

[□□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귀농·귀촌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초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금을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1. 교육 훈련 지원
2. 농업 창업 자금 지원
3. 농지 구입 자금 지원
4. 주거 지원
5. 기타 농업관련 보조사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제10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시장은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귀촌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지역 또는 도시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귀농자가 실제 농업에 종사 하지 아니한 때
3. 보조 목적 외의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할 때
6. 시장이 귀농·귀촌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1 문제점

- 귀농·귀촌자에 대한 교육훈련지원, 농업 창업 자금 지원, 농지 구입 자금 지원, 주거 지원 등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원금에 해당함.
- 이러한 지원금의 환수와 관련하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 특히,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 사유, 환수 대상 금액, 납부 기한 및 납부 기관을 적은 문서로 납입의 고지를 해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환수 대상 금액은 지원 받은 원금과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납입일의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로 한다고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지원 기관의 장은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도록 하고 있는 등 그 지원금의 환수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해당 규칙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달리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임.

2 개선방안

- 지급된 지원금 환수와 관련해서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되므로 삭제하거나, 규정하는 경우에도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개선

 관련법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지원금”이란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보조, 융자, 이자차액보전, 세제혜택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제21조의2(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지원금의 환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원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 사유, 환수 대상 금액, 납부 기한 및 납부 기관을 적은 문서로 납입의 고지를 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 금액은 지원받은 원금과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납입일의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로 한다. 다만, 세제혜택에 대한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 기관의 장은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수 사유 발생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③ 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지원 기관의 장은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4 임의적 과태료 부과 처분 유예 개선

예시

[□□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과태료)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공고한 구역에 대해서는 지정된 날부터 6개월 간의 홍보 및 지도 기간을 거친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문제점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에서는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서는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별표 5 제1호다목에서는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태료 금액의 가중 및 감경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의 규정에서도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새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 그런데, 해당 규칙은 군수가 임의로 홍보 및 계도하기 위한 일정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민건강증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또한, 금연구역의 지정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 입법 절차 상의 조치와 시행일을 유예하는 입법조치 등을 통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임의로 처분을 유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2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의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관련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⑦ (생략)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생략)

제34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생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4조제1항제1호 · 제2호,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법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2. 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3. 법 제34조제2항제3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4. 법 제34조제3항(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해당 금연구역을 지정한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3조제1항 관련)**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 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1호	170	330	500
나.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1호	75	150	300
다. 법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34조 제3항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	10	10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5	5	5
3)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	10	10
4)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라.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2호	170	330	500
마. 법 제9조제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3호	170	330	500
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4호	170	330	500
사.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3호	75	150	300

5 지방세입징수 보고서 제출 절차 개선

예시

[□□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세입징수 결과제출) 구청장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구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구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1 문제점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징수관은 매월 세입징수 보고서를 작성하고, 세입 월계표(月計表) 등 참고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은 징수관(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 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공무원, 법 제21조제2항)이 세입징수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광역시세의 징수업무를 광역시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의 규정이 구청장의 구세에 대한 세입징수 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확대하여 해석하기 어려움.
- 그런데, 해당 규칙에서는 구청장에게 구세의 세입징수 보고서를 별개의 공법인의 대표인 광역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2 개선방안

- (1안) 해당 규칙의 취지가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 관할 구역안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시·도세의 징수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세입징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구청장이 구세에 대해서 ○○광역시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안) 1안의 취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징수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징수관은 매월 세입징수 보고서를 작성하고, 세입 월계표(月計表) 등 참고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세징수법」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군·구 내의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이하 “시·도세”라 한다)를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군·구가 부담하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군·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시·도세와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해당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6 지방자치단체의 의안발의 요건 개선

예시

[□□시 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며,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하여야 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의 의안발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해당 규칙에서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요건을 제외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2 개선방안

-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내용 추가

**관련법령****「지방자치법」**

-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7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발령 기준 개선

예시

[□□군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0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항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 ①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 ②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군수, 사업소장 및 읍면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가 발령중에는 부서책임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향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1 문제점

- 지방공무원의 비상근무의 종류 및 요령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 및 제2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칙에서는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2 개선방안

- 비상근무의 종류 및 요령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면 되므로 해당규정을 삭제하거나, 규정하는 경우에도 상위법령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개선


관련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 나.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제2조의4(비상근무 요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의3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와 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의2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토요일 및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야간에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 인력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비상근무 인력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력에는 가급적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업무 담당자, 정보화 업무 담당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8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

예시

[□□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무조사”라 함은 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검사권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및 기타 물건을 심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범칙사건조사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3. (생략)
4. “일반조사”라 함은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여부, 과세표준액 및 세율 적용의 적정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특별조사”라 함은 세금을 탈루시킨 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 조사방법으로는 조사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별도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 8. (생략)

제12조(특별조사대상자) ① 특별조사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 등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탈세혐의가 있거나 탈세정보가 구체적으로 제공된 경우
2. 일반조사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1 문제점

- 해당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서 구분하고 있는 일반조사 및 특별조사는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 조사 및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조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은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이, 정기조사 외의 조사 대상자 선정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이 적용된다 할 것임.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기선정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절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할 수 있고,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조사는 납세자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할 수 있음.
- 그런데, 해당 규칙 제12조제1항에서는 특별조사(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조사)의 대상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일반조사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제2호)를 특별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무조사의 대상자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2 개선방안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되므로 해당 규정은 삭제하거나, 규정하는 경우에도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개선
- 하위법령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은 법령 등의 해석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은바(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 2017. p723), 해당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호 등의 용어를 상위법령과 통일하여 규정 필요

**관련법령****「지방세기본법」**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절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9 지방세 세무조사 재조사 기준 개선

예시

[□□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 제13조(중복조사금지) ① 동일한 납세자에 대하여 일반조사를 연 2회이상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객관적으로 명백한 세금탈루혐의가 있거나 납기전 징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군수가 일반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문제점

- 지방세 세무조사의 재조사 기준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2항에서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제88조 제4항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및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서는 법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이하 “범칙사건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 중 서면조사만 하였으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경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각종 과세정보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로 재조사 기준을 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규칙에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그런데, 해당 규칙에서는 지방세 세무조사의 재조사기준을 「지방세기본법」과 달리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2 개선방안

- 지방세 세무조사의 재조사 기준과 관련해서는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르면 되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거나, 규정하는 경우에도 상위법령의 내용과 일치 되도록 개선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제100조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삭 제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재조사 금지의 예외) 법 제8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이하 “범칙사건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2. 법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 중 서면조사만 하였으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경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각종 과세정보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10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개선

예시

[□□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조사개시 10일전 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의무자에게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등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에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때에는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에 응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居所
2.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3.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연기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문제점

-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1항에서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는 조사개시 15일 전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칙에서는 이를 10일로 규정하고 있음.

2 개선방안

- 지방세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는 조사개시 15일 전까지 하도록 규정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83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통지 사항
2.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11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개선

예시

[□□시 지방세 세무조사 규칙]

제18조(조사기간) 시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조사대상자 별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착수하되, 조사기간은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기간의 연장) 세무조사를 착수한 후 기한내에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문제점

- 「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본문에서는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대상자의 세금 탈루 혐의의 해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해당 규칙에서는 세무조사의 기간 및 연장 기간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으면서, 그 연장 사유에 대해서도 상위법령과 달리 규정하고 있음.

2 개선방안

- 세무조사 기간, 연장 기간 및 그 사유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되므로 해당 규정은 삭제하거나, 규정하는 경우에도 상위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선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84조(세무조사 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6.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대상자의 세금 탈루 혐의의 해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지사유가 소멸되기 전이라도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사유와 그 기간을 미리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12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절차 개선

예시

[□□군 시세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군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문제점

-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的主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할 수 있고, 명단공개는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 그런데, 해당 규칙에서는 군세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를 도지사에게 요구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2 개선방안

-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명단공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하도록 개선
- 다만, 해당 규칙의 취지가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가 위임한 시·도세 징수업무의 수행의 일부로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면,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 명단공개와 구분하여 규정·운영 필요

관련법령

「지방세징수법」

-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하였으나 지방세징수권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 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군·구 내의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이하 “시·도세”라 한다)를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군·구가 부담하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군·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시·도세와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해당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13 하수도 배수설비 공사대행업자의 책임범위 개선

예시

[□□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9조(보증금) ① (생략)

②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흠이 있거나 급수공사 청구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보증금으로서 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고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1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지 공사 신청인 등의 손해배상을 충당하기 위해 납부하는 것은 아님.
- 또한, 지방계약법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하자보수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하자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2 개선방안

- 청구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되므로 해당 규정은 삭제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에서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하자 검사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예치기간, 금액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① 법 제2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 보수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고 이를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계약별로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목적물에 대하여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고 나서 하자 보수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⑤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의 경우에는 제37조제2항·제4항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제71조의2(하자보수이행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제71조의3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1조의3(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목적물의 설계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 등이 입회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 지방인사위원회 서면심의 · 의결 사항 개선

예시

[□□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 · 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
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원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
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8.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대상으로 지정한 안건

1 문제점

- 「지방공무원법」 제10조제3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 ·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자치법규에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그런데, 해당 규칙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사항에서 제외하고 있거나, 임의적으로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대상으로 지정한 안건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위법령과 달리 정하고 있음.

2 개선방안

-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되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거나, 규정하는 경우에도 상위법령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개선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인사위원회의 회의)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한다)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되, 제7조 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경우 그 인사위원회 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인사위원회의 회의구성 및 서면심의)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인사위원회 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여성위원 2명 이상과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총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3.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4.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5.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6.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7.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원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8.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15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기준 개선

예시

[□□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제2조(심사기준) 재정 투·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구의 주요시책 및 중·장기계획 등과의 부합성
3. 투자사업의 규모
4. 경제성 및 효과성
5. 재원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

1 문제점

-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투자심사기준에 대해서 달리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칙에서는 투자심사기준을 상위법령과 달리 정하고 있음.

2 개선방안

- 투자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르면 되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거나, 규정하는 경우에도 상위법령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개선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 가. 채무부담행위
 -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 ② ~ ④ (생략)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弘報館) 사업
 -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 사업
 - 라.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② 삭제
- ③ 삭제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투자심사의 기준 그 밖에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2조(투자심사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
6.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제14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6 공유재산 기부채납 제출 서류 개선

예시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기부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3. 기부의 목적을 기재한 서류
4. 재산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1 문제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는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기부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서 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데, 해당 규칙에서는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2 개선방안

- 기부채납시 기부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따르면 되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거나, 규정하는 경우에도 상위법령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개선

**관련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 ② ~ ⑤ (생략)

17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범위 개선

예시

[□□군 공무원 행동강령]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군 소속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과 군에서 파견한 공무원, 청원경찰, 공중보건의사 및 「□□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한다.

1 문제점

- 「공무원 행동강령」 제3조에서는 국가공무원(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과 지방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그 적용범위를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경우에도 그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가능하고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임.
- 그런데, 해당 규칙에서는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지방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법」에 따라 임용·배치되는 청원경찰 등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2 개선방안

-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에서 청원경찰 및 기간제근로자 제외


관련법령
「공무원 행동강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국가공무원(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과 지방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청원경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請願警察經費)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2.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한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 제8조(징계) ①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법 제5조의2제2항의 정직(停職)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 ③ 법 제5조의2제2항의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 ④ 법 제5조의2제2항의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 ⑤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징계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⑥ 지방경찰청장은 제5항에 따른 징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18 자체감사 자료 제출요구 대상 개선

예시

[□□시 자체감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이 그 소관 사무를 감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기관·단체·개인·법인(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읍·면·동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기관
3. 시비를 보조받은 개인이나 법인·단체·기관.

제3조(감사의 종류 등) ①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
 - 가. 자체감사: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 나. 공공기관 종합감사: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2. ~ 5. (생략)
- ②·③ (생략).

제12조(자료제출 요청) ①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요청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청
 3.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청
 4. 관계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5.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② 감사대상기관은 제1항의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 ③ ~ ⑤ (생략)

1 문제점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서는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자료 제출 요구 대상을 자치법규에서 확대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그런데, 해당 규칙에서는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청 및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2 개선방안

- 자체감사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따르면 되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거나, 규정하는 경우에도 상위법령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개선



관련법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 7. (생략)

제20조(자료 제출 요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19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 개선

예시

[□□시 무형문화제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지원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 및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시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후이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문제점

- 시장이 무형문화제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보조금에 해당하고,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에서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제1호),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제2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제3호),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4호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사유를 규정하려는 경우 그 입법형식은 조례라고 할 것임.
- 또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지방보조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범위에서 그 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할 것임.

- 그런데, 해당 규칙은 조례가 아닌 규칙의 형식으로서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교부결정의 취소사유로 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2 개선방안

- 교부결정의 취소사유는 조례로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 6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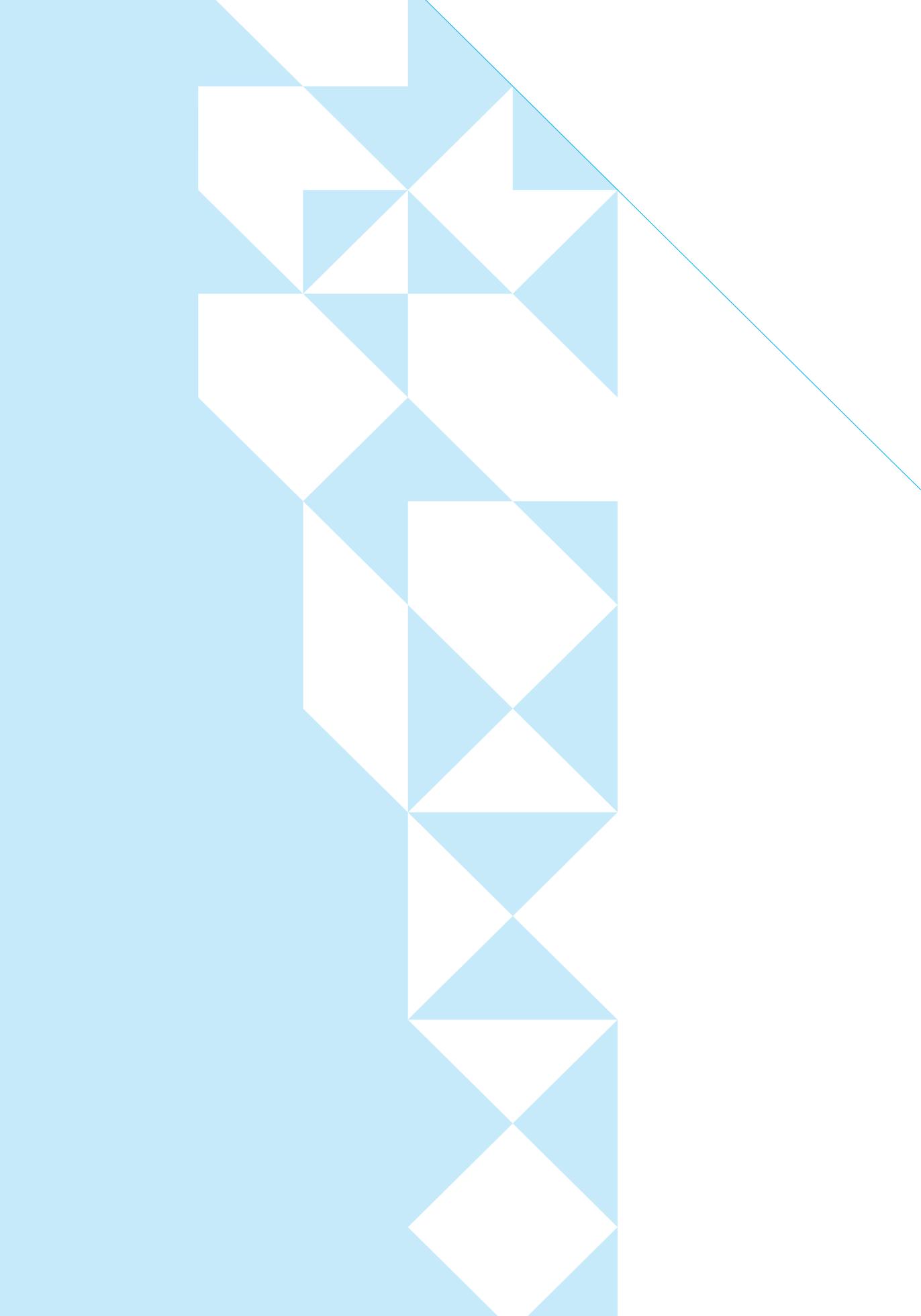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법례]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0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법 제32조의8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 2 장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1 행정재산의 원상복구 절차 개선
- 2 법령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개선
- 3 행정재산 관리위탁 수탁자의 손해배상 범위 개선
- 4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해지 사유 개선
- 5 불합리한 약관 개선



- 6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보증금 예치제도 개선
- 7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절차 개선
- 8 지방공무원 징계사실 공개 개선
- 9 주차장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 10 지방세 세무조사 압수·수색 절차 개선



- 11 행정재산 관리위탁 수탁자의 보험가입의무 개선
- 12 소송사무 공무원의 책임 범위 개선
- 13 법령의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선



1 행정재산의 원상복구 절차 개선

예시

[□□구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8조(설비) ①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전 또는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비설치에 따른 사용기간 이전과 이후의 기간은 사용일수에 산입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종단과 동시에 철거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가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④ 시설의 원상복구 및 철거된 설비의 처리비용은 인부임과 운반비, 관급봉투,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의 원상복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 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을 명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항에서는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집행의 일반법인 「행정대집행법」에서는 대집행의 절차 및 실행 등을 규정하면서, 특히, 제3조제1항에서는 처분(以下 代執行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

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6조제1항에서는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 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또한,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집행책임자는 행정대집행 시에 의무자의 재산상 손실과 비용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의무자가 차지할 물건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도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 그런데, 해당 규칙에서는 상위법령의 규정과 달리 행정대집행을 하는 경우 구청장은 설비의 파손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거나, 7일 이내 철거된 설비를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2 개선방안

- 행정대집행을 하는 경우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않거나, 7일 이내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으면 임의처분한다는 규정 정비 필요
- 행정재산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되므로 삭제하거나, 규정하는 경우에도 규칙이 아닌 조례의 형식으로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개선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法律의 委任에 依한 命令,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지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以下 代執行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① 행정청(제2조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2.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 ② 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때 대집행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여 대집행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징수) ①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②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특권을 가진다.
- ③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제7조(행정심판)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7조(대집행 시의 준수사항) 행정대집행 시에 행정대집행 관서의 장은 대집행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 집행책임자는 집행을 당하는 의무자의 재산상 손실과 비용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의무자가 차지할 물건(物件)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도(引渡)하여야 한다.

2 법령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개선

예시

[□□시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지정을 취소당한 사람으로서 그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대행업자로서 연 2회 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9조(지정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시공기술자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2. 제4조에 규정한 지정 기준요건을 결하였을 때
3. 제6조에 제1호와 제2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
4. 제9조에 규정한 보증금을 기간 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5.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시 수도 급수 조례]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 ② ~ ⑤ (생략)

1 문제점

- 결격사유는 임용·고용·위임 관계 등의 법률관계에서 그 당사자가 될 수 없거나, 국가가 창설하여 운영하는 각종 자격 제도에서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며, 각종 인허가, 등록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하는데(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17, p162),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반드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야 함.
-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시 수도 급수 조례」 제9조제1항에서 급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제1호) 등으로서 시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위탁을 통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결격사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를 따라야 할 것임.
- 그런데, 해당 규칙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결격사유를 해당 규칙에서 신설(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2 개선방안

- 법령상 근거 없는 결격사유(지정취소 사유 포함) 삭제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 가. 제8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제3호의3·제8호·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 제8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라.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제3호의3·제4호·제5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②·③(생략)

3 행정재산 관리위탁 수탁자의 손해배상 범위 개선

예시 1

[□□시 ○○ 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제9조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시설물을 설치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은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은 변상의 책임을 진다.

예시 2

[○○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6조(협약체결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기관의 동의 없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협약사항의 불이행
 2. 불성실한 관리
 3. 천재지변 등에 상당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당해 위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8조(사후관리 등) ① 위탁기관은 위탁관리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된 경우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수탁물을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원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위탁기관은 위탁기간 중 수탁자의 필요에 의해 설치한 각종 시설물 또는 기득권에 대하여 보상 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1 문제점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계약의 해지 사유 및 보상의 범위는 위탁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위탁 계약서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과 같이 갑이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은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수탁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모든 손해를 지도록 하는 것으로서 해당 규칙은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 경우 보상하도록 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제1호) 등을 보상액으로 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보더라도,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탁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임.

2 개선방안

-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수탁자의 손해배상 범위 개선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2.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이식(移植)에 필요한 경비
3.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이식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감정평가업자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4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해지 사유 개선

예시

[□□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① 「□□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 생활폐기물 수집에 응할 수 없는 쓰레기 배출자로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하여금 방문 수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여건 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작업상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서 방문 수거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경우
 2. 부부맞벌이가정 등 수집·운반차량에 쓰레기를 상차하지 못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배출자가 요청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방문수거를 할 경우의 생활폐기물 수집방법 및 수수료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체는 계약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생활폐기물의 수거간격 및 방법
 - 나. 생활폐기물의 수집 수수료·납부시기 및 방법
 - 다.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등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불성실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은 해당업체로 하여금 해약을 명하고 다른 업체로 하여금 신규계약 토록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수수료는 계약 쌍방이 협의 결정하되 매년 시장 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문제점

-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제3호에서는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위임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5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가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종합해 보면, □□시장은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해당 규칙과 같이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만으로 대행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또한,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기준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칙에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2 개선방안

- 법률에 근거없는 대행계약의 해지사유는 삭제하고, 대행계약의 해지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선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 ~ ⑦ (생략)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 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 7. (생략)

⑨ (생략)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5(대행계약의 해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가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불합리한 약관 개선

예시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제21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1 문제점

-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해당 별지 서식의 명칭은 “계약서”이지만 약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는 약관상의 관할의 합의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별지 서식에서는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판례에서도,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을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규정하여 “갑”에게 유리하고 “을”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무효로 본 사례가 있음(대법원 1998. 6. 29. 자 98마863 결정 참조).

2 개선방안

-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합리적인 약관 제도 개선

 **관련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2.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3.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관련 판례(대법원 1998. 6. 29. 자 98마863 결정)**
[판결요지]

대전에 주소를 둔 계약자와 서울에 주영업소를 둔 건설회사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 공급계약 서상의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는 관할합의 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약관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규정한 것이어서 사업자에게는 유리할지언정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약관의규제에 관한법률 제14조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대전에 주소를 둔 항고인과 서울에 주영업소를 둔 항고외 선경건설 주식회사 등과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계약서 제15조 제6항은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할합의 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소정의 약관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규정한 것이어서 사업자에게는 유리할지언정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약관규제법 제14조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관할합의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약관규제법 제1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보증금 예치제도 개선

예시

[□□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

- 제9조(보증금) ① 대행업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으로서 2,000,000원을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②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흠이 있거나 급수공사 청구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보증금으로서 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고 손해배상금으로 총당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배상금 총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 ④ 보증금은 대행업 지정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취소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군 수도 급수 조례]

- 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 관계인 등의 이익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익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기증권, 국공채 등의 유기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문제점

- (제1항 관련) 대행업자에게 지정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2백만원을 예치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에게 금전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임.
- 해당 규칙의 상위 자치법규인 「□□군 수도 급수 조례」 제19조제2항에서는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칙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보증금을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에 상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규칙 제9조제1항의 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제21조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그렇다면, 해당 규칙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시기 및 금액 등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의 규정에서도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시기 및 금액 등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음.
- 그런데, 해당 규칙에서는 일괄적으로 대행지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2백 만원을 군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어 법률에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제2항 및 제3항 관련) 지방계약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지 공사 신청인의 손해배상을 충당하기 위해 납부하는 것은 아님.
- 또한, 지방계약법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하자보수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하자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는 없을 것임.
- 결국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보수에 직접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대행업자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민법」 및 「형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된다고 할 것임.
- 그런데, 해당 규칙과 같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보수 및 손해배상금이 부족한 경우 대행업자에게 추징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제4항 관련) 해당 규칙 제9조제1항의 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제21조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그 납부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연 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음.

- 그런데, 해당 규칙에서는 대행업 지정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취소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법률에 근거 없이 대행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2 개선방안

-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금액, 충당 방법 및 반환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되므로 삭제하거나, 규정하는 경우에도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개선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에서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하자 검사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예치기간, 금액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시켜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① 법 제2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고 이를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계약별로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목적물에 대하여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고 나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의 경우에는 제37조제2항·제4항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제71조의2(하자보수이행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제71조의3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1조의3(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목적물의 설계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 등이 입회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준공검사 또는 제조의 납품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최종지출 시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영 제7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61조(보증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그 납부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영 제7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1. 철도, 댐, 터널, 철강교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 항만, 식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사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 100분의 3
 6. 수리, 가공, 구매, 용역: 100분의 2
- ② 영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

7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절차 개선

예시

[□□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지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 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1 문제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설립할 수 있는 직장협의회에 관해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직장협의회 설립 절차 등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단서에서는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해당 규칙에서는 보완을 하지 않은 이유로 설립사실통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어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2 개선방안

-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의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 철회한 것으로 본다는 부분 개선

관련법령

「공무원직장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 일시·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당해 기관에 20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④ 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8 지방공무원 징계사실 공개 개선

예시

[□□군보 규칙]

제5조(사령란) 사령란에는 군소속 공무원의 임면, 전출,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1 문제점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제9조에서는 징계의결 등의 통보대상을 징계의결 요구자와 처분권자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2조에서는 징계 등에 관한 회의에 참석된 사람에게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또한,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행정안전부령) 제21조에서는 임용권자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등의 신규채용, 승진, 전직, 기관 간 전보, 전출, 전입, 정년퇴직, 명예퇴직 및 추서 등의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서만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고,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도 지방공무원의 징계사실을 공보에 게재하거나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음.
- 징계사실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로서 해당 규칙과 같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군보에 지방공무원의 징계사실을 게재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 없이 규제를 신설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공무원인 진정인의 징계사실에 대해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공람 조치를 한 것에 대한 결정에서 징계사실은 민감한 정보에 해당 하는 등의 사유로 위의 조치는 진정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

2 개선방안

- 군보 게재 대상에서 징계 사항 삭제

 관련법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9조(의결 통보) 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이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서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이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의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등이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의 요구자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의 처분권자가 다를 때에는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징계등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1조(공보의 게재) 임용권자는 5급 이상 소속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 전직, 기관 간 전보, 전출, 정년퇴직, 명예퇴직 및 추서 등의 인사발령 사항은 발령과 동시에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소속 공무원 징계사실 공람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18-진정-0481400, 2018. 8. 29.)]

(중 략) 공직자의 의무위반 사실과 징계 사실은 ①공무원으로서 불명예스러운 정보이므로 징계대상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②공무원에 대한 징계기록은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5조에 따라 인사기록으로 분류되어 권한 외의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되고 있다는 점, ③「공무원 징계령」 제18조는 징계의결 등의 통보대상을 징계의결 요구자와 처분권자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시 개인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 (중 략)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사례를 전파하더라도 소속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강화라는 공익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다른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사례를 전파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목적달성을 위해 반드시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중 략) 이 사건 공문 공람 조치는 법적인 근거 없이 진정인의 권리를 제한한 조치이며,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9 주차장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예시

[□□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8조(과징금 부과기준) 주차장법 제2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과징금 부과 기준

위반행위	위반 정도	과징금액
1. 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의 공용을 개시한 때	위반시	250만원
	위반상태가 1개월 이상	300만원
2.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때	위반시	100만원
	2회 이상 위반 또는 주차요금의 100% 이상	110만원
	3회 이상 위반 또는 주차요금의 100% 이상	120만원
- 이하 생략 -		

1 문제점

-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금액은 별표 5와 같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규모, 노외주차장 설치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그 5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해당 규칙에서는 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의 공용을 개시한 때에는 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별표 제1호)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어 법률에 근거 없이 규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2 개선방안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위반행위의 종류 등 삭제

관련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규모, 노외주차장 설치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그 5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별표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17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24조제1호	50만원
2.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법 제24조제2호	50만원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법 제24조제3호	50만원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법 제24조제4호	50만원

※ 비고: 위 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0 지방세 세무조사 압수·수색 절차 개선

예시

[□□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6조(수색, 영치의 금지) ① 세무조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영치할 수 없다.

1. 현행중인 범칙행위를 발견할 때
 2. 비밀장부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범칙증거를 발견할 때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행위 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문제점

-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2항에서는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를 범칙사건조사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경우를 세무조사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13조에서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등에만 범칙사건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4조에서는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15조에서는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범칙사건조사를 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기본법」에서는 범칙사건조사공무원에게만 범칙사건조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필요에 한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도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등 범칙사건조사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 세무조사를 하는 공무원에게는 압수·수색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그런데, 해당 규칙에서는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아닌 세무조사공무원에게 범칙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압수·수색영장 없이 바로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률에 근거 없이 규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2 개선방안

- 지방세 세무조사를 위해 수색하거나 영치할 수 있다는 내용 삭제



관련법령

「지방세 기본법」

제76조(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 및 교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현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현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사(이하 “범칙사건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나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현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나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현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113조(범칙사건조사의 요건) 세무공무원 중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사건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범칙사건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지방세 포탈 혐의가 있는 금액 등의 연간 액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제114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칙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15조(압수·수색영장) ①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범칙사건조사를 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 혐의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있다.

1.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의 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2. 범칙혐의자가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②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거나 수색한 경우에는 압수하거나 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 청구절차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③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압수한 물건을 압수당한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④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압수한 물건을 운반하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 소지자 또는 관공서(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으로부터 보관증을 받고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수한 물건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1 행정재산 관리위탁 수탁자의 보험가입의무 개선

예시

[□□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구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사업계획서,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의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현황 등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구에 인계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구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하거나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전대하거나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⑥ 수탁자는 위·수탁계약시 구청장이 정하는 한도금액을 보증금으로 하고 구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 이행재정보증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 법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⑦ 수탁자는 시설의 위탁 관리·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률적 책임은 수탁자가 져야 한다.

1 문제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 등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여 수탁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손해보험 가입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 수탁자에게 손해보험의 가입의무를 지우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 밖의 개별법령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회관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손해보험 등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없음.
- 그런데, 해당 규칙에서는 법률에 근거 없이 수탁자에게 보험가입의무를 지우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수탁자가 수탁기간 중에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민법」과 「형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는 것인데도, 해당 규칙에서는 과실유무, 책임의 소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률적 책임을 수탁자가 지도록 하고 있음.

2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물 등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 보험료 등을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도록 개선
-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법」(제750조, 제751조 및 제758조 등)과 「형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관련 내용 삭제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12 소송사무 공무원의 책임 범위 개선

예시

[□□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송수행자”라 함은 행정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라 함은 행정 및 민사소송사건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단독심 사건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얻은 공무원을 말한다.
3. ~ 8. (생략)

제11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지정, 지명, 선임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교부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을 집행한다.

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5호 서식)
2. 소송담당자 – 지명장(별지 제6호 서식)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 소송위임장(별지 제8호 서식)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 소송위임장(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서약서

소직은 000의 소송사건000로서 맡은바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만일 본 업무수행에 추후의 고의나 과실을 범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문제점

-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업무처리과정에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 등(제9장),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고 할 것임.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제2항에서는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징계 등 요구의 내용과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에서도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이상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징계는 법령에서 정하는 징계기준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런데, 해당 규칙에서는 소송을 수행하는 지방공무원이 직무수행에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책임의 소재 등에 상관없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도록 하고 있어 법률에 근거 없이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2 개선방안

- 지방공무원의 징계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한 징계기준 및 절차에 따르도록 개선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이 법에 따른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경력직공무원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69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⑤ (생략)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와 계부가금 부과 및 소청(訴請)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장이 준용되는 별정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과 소청 절차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징계등의 양정) ① 징계등 양정(量定)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징계등 요구의 내용과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비위행위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비위 행위의 제안·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 삭 제

13 법령의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선

예시1

[□□구 의회청원 심사 규칙]

청원소개의견서 및 청원철회요구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예시2

[○○시 ○○공원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공원 출입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예시3

[△△시 ○○낚시터 관리 조례 시행규칙]

회원 가입증명서, 이용규정 준수동의서 및 회원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1 문제점

-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2011. 9.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2 개선방안

- 상위법령에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통상적으로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대통령령에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와 같은 조 제명 하에 관련 규정을 둠) 관련 근거 규정이 없고,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의 급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선


관련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 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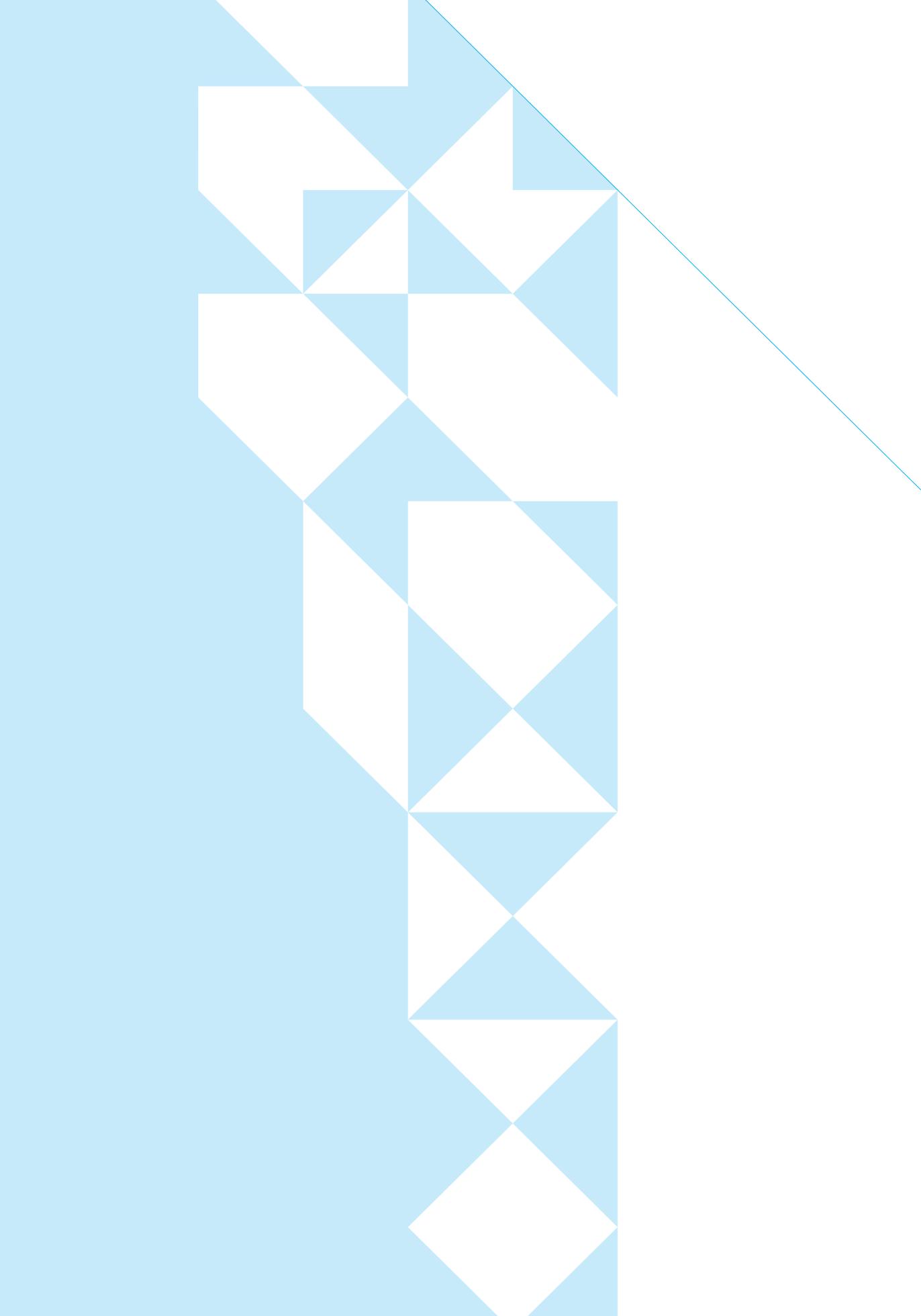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 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제 3 장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1 지방공무원 소송사무 처리 절차 개선
- 2 장애인 등급제 개선
- 3 지방공기업의 중요자산의 취득·처분 제도 개선
- 4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 개선
- 5 지방공무원 평정을 위한 자격제도 개선



- 6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지원제도 개선
- 7 지방보조사업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 8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촉규정 개선
- 9 정책실명제 운영 규정 개선
- 10 지방공무원 징계의결 등 면제 사유 개선



- 11 도로점용허가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개선
- 12 공유재산 관련 감정평가 업무 주체 개선
- 13 교육환경보호구역 명칭 개선



1 지방공무원 소송사무 처리 절차 개선

예시

[□□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22조(임의 변제) ①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 선고부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가집행 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 되었을 경우에는 확정 판결 전이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임의 변제할 수 있다.

② 임의 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 하여야 한다.

1. 배상금 임의 변제 청구서 (별지 제8호 서식)
2.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 확정 증명서)
3. 인감증명서
4. 위임장(소송 대리인 또는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각서(별지 제9호 서식)

1 문제점

- 국가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지방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 국가소송에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 국가의 패소로 확정되어 국가에서 임의변제를 하려는 경우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 종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제595호) 제27조제2항에서는 임의변제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국민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원 확인에 사용되던 인감의 대체 수단을 마련하는 인감증명제도 개편 사업을 정부 정책으로 채택(2009. 7. 29.) 함에 따라, 임의 변제를 받으려는 자의 대리인이 임의변제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하던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되었음(2010. 7. 2 공포 · 시행, 제27조제2항제3호).

- 임의 변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 국가의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취지 역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감의 대체 수단을 마련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규칙에서도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개선방안

- 국민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임의변제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으로 정비

관련 자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제705호, 2010.7.2. 공포·시행)

◆개정이유◆

2009. 7. 29.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국민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원 확인에 사용되던 인감의 대체 수단을 마련하는 인감증명제도 개편 사업을 정부 정책으로 채택함에 따라, 임의변제를 받으려는 자의 대리인이 임의변제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하던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는 한편, 국가소송 수행자의 임의 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소송 수행자의 조정에 관한 사전 지휘 요청 의무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의변제의 절차 등) 국가소송에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 국가의 패소로 확정되어 국가에서 임의변제를 하려는 경우 그 지급기관, 지급절차, 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임의변제의 절차등)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변제의 지급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다만, 특별배상심의회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 소관사건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각 특별회계 소관사건에 관하여는 각 특별회계 해당 행정청의 장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소관행정청의 장
 - ②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임의변제청구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변제청구서를 받은 지급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특별회계 소관사건에 관하여는 2주일 이내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임의변제청구의 구비서류) ①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변제청구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하여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임의변제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판결문 정본 1부, 등본 2부
 2. 판결확정증명서 2부
 3.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위임장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부

 **종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제595호, 2010. 7. 2.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임의변제청구의 구비서류) ①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변제청구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하여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임의변제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판결문 정본 1부, 등본 2부
2. 판결확정증명서 2부
3.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위임장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2부

2 장애인 등급제 개선

예시1

[□□시 ○○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관람료) ① □□시가 주관하는 공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1급~3급까지의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 □□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하의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구성원
- ② (생략)

예시2

[○○시 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무료택배서비스 이용) ① 장애 3급 이상 중증장애인은 무료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도서대출 및 반납을 할 수 있으며, 무료택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여 회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예시3

[△△구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감면 신청 등) ① · ② (생략)

③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가구분할을 적용받는 수급자가 있는 세대의 경우에는 가구분할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10세제곱미터 사용량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면제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10세제곱미터 사용량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면제
3. ~ 5. (생략)

1 문제점

-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2017. 12. 19.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및 “장애등급이 제4급부터 제6급까지의 장애인”을 각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별표 1)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음(2019. 6. 4. 공포, 2019. 7. 1. 시행).

2 개선방안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참고하여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요금 감면 대상을 장애 등급이 아니라 장애 정도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개선
- 다만, 종전 장애등급 기준이 개편되는 장애 정도 기준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정비

현행	예시안
제4조(기준 및 지원금)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등급 1 ~ 2급: 00만원 2. 장애등급 3 ~ 4급: 00만원 3. 장애등급 5 ~ 6급: 00만원	제4조(기준 및 지원금) ① _____ _____ _____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00만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00만원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 제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 (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이하 생략 -

3 지방공기업의 중요자산의 취득·처분 제도 개선

예시

[□□군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규칙]

제109조(중요한 자산의 범위) 관리자가 법 제40조와 설치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또는 처분해야 할 중요한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2,000만원 이상
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200평 이상 다만, 1건당 200평미만의 경우라 할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중요한 자산으로 본다.

1 문제점

- 종전 「지방공기업법」(법률 제4371호) 제40조에서는 “지방공기업이 사용하는 자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은 관리자가 행한다. 다만, 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40조에서는 중요자산의 범위를 자치법규로 위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요자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이 아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해당 규칙에서는 □□군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에 따라 여전히 중요자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자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의회의 의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2 개선방안

-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처분할 수 있는 중요자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거나, 규정하는 경우에도 상위법령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개선. 이 경우 상위

자치법규인 「□□군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에서 중요자산의 범위를 위임하고 있는
규정도 함께 정비 필요



관련법령

「지방공기업법」

제40조(중요 자산의 취득·처분) ① 지방직영기업의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1조(중요자산의 취득·처분) ①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7호·제8호 및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처분하는 자산은 이를 제외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2억 5천만원)인 자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로,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1건당 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득·처분
결과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지방공기업법」(법률 제5200호, 1999. 1. 29.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40조(중요자산의 취득·처분) 지방직영기업의 자산 중 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종전 「지방공기업법」(법률 제4371호, 1992. 12. 8.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40조(기업자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 지방공기업이 사용하는 자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은 관리자가 행한다. 다만, 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 개선

예시

[□□시 탈세정보교부금 지급 규칙]

제1조(교부금 지급대상) 포탈세액, 면세액 또는 벌과금의 산정에 기본이 되는 주자료를 성명, 직업, 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경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제보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134조 제2항과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지급한다. 다만, 허위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조(교부금의 지급시기) 교부금은 당해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3조(교부금액) ① 교부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차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1. 벌과금 또는 벌과금 확정액 10만원 이하 25%
 - 2. 10만원 초과 20%
 - 3. 50만원 초과 15%
 - 4. 100만원 초과 10%
- ②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 100원 미만일 때에는 100원으로 하고 단수가 생길 때에는 이를 절사한다.

제4조(교부금산정의 기준) ① 교부금산정의 기준은 납부된 벌과금 또는 확정된 벌과금에 한하고 추징 세액이나 몰수품 또는 몰취품(沒取品)에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탈세액 또는 면세액만을 추징한 경우와 몰취처분 또는 몰수처분만을 한 경우 및 자유형만을 과할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무원)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단서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할 때”라 함은 상사의 직무상 명을 받아 수집하거나 기타 직접간접을 막론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기회에 얻은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교부금의 지급) ① 교부금은 정보를 조사한 후 시장이 이를 지급한다.

② 교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코자 할 때에는 주자료제공자와 교부금수령자가 동일인임을 주민등록증등으로 확인한 후 영수증을 받고 지급한다.

제7조(교부금의 지급) 교부금의 지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우선 시에서 지급하고 도세에 상당한 교부금을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 규정에 준하여 교부 받아야 한다.

1 문제점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2013. 1. 1. 공포, 2013. 4. 1. 시행)되어, 같은 법 제146조에서는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8항에서는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등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 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7항에서는 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포상 사유(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등)에 대해서 같은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탈세 제보 포상금제도와의 관계가 불분명한 포상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국세기본법」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범 처벌절차법」이 전부개정(2011. 12. 31. 공포, 2012. 7. 1. 시행)되어, 국세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이 아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가 적용됨.
- 결국, 국세 포상금 지급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이 적용되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별도로 제정된 조례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 및 국세의 포상금 지급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규칙은 폐지하여야 함.

2 개선방안

- 해당 규칙은 폐지하고, 별도의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 운영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⑨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1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5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5,50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② 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징수금액	지급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1,2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③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지급, 이체입금 등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 ④ 법 제1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에는 1천만원을 말한다.

- ⑤ 법 제14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2.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 ⑥ 법 제14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제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 나.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발급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 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4의2.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
- 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 가. 법인
 - 나. 복식부기의무자
-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법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법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제1항제6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처벌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 ③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전 「조세범처벌절차법」 (법률 제10528호, 2012. 7. 1.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6조(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중전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44호, 2012. 7. 1.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8조(포상금액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포상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3항 및 제5조에 규정된 범칙행위: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2. 「조세범 처벌법」 제4조제2항·제4항, 제16조제5항 및 제17조에 규정된 범칙행위: 부과된 과태료 금액
3.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규정된 범칙행위: 해당 주세 상당액
4. 「조세범 처벌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범칙행위: 면탈하였거나 면탈을 의도하였던 세액 상당액
5. 「조세범 처벌법」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범칙행위: 법 제9조에 따라 통고(통고대로 이행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되거나 재판으로 확정된 벌금액 또는

- 과료액. 다만, 벌금 없이 징역에만 처해진 경우에는 해당 조문에 규정된 벌금의 상한 금액
6.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칙행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
7. 「조세범 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칙행위: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② 법 제16조 본문에 따른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직업 및 주소를 명확하게 적고 서명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요구하면 지체 없이 출석하여 해당 자료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5 지방공무원 평정을 위한 자격제도 개선

예시

[□□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6조(자격증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

1. 5급부터 9급까지

직렬 \ 계급	5 급	6급 · 7급	8급 · 9급
행정, 세무, 교육 행정, 사회복지,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전 산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 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 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 전문가)

- 이하 생략 -

1 문제점

- 종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제23조 및 별표 3에서는 5급 이하의 공무원 등의 자격증별 가산점을 직접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삭제하고 가산점의 부여 기준, 자격증 등의 종류 및 그 가산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음(2016. 5. 19. 공포, 2017. 5. 20. 시행).
- 그런데, 해당 규칙에서는 이러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지 않고, 여전히 자격증의 종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2 개선방안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 내용에 따라 자격증 종류별 가산점 부여기준 등 신설

관련법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이수증 또는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이하 “자격증등”이라 한다)를 소지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자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담당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제1호에 따른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등

3.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 자격증등의 종류 및 그 가산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격증등에 대한 총가산점은 0.75점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증등을 소지한 경우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줄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서 영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2. 영 제17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3.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시험과목의 전부를 면제받거나 자동적으로 취득한 자격증등
4. 유효기간이 지난 자격증등

④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등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는 다른 자격증등과 중복하여 가산점을 줄 수 있다. 다만,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⑥ 임용권자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준이나 자격증등의 종류 등을 신설·변경·폐지하는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공개하고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중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6. 5. 19.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2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이수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지도직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점수를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담당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해당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 평정을 할 수 없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서 영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의 해당 자격증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4. 별표 3 제1호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격증이 둘 이상인 경우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평정대상으로 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대한 가산점은 그 확인서의 유효기간에 한정하여 가산점 평점을 할 수 있다.

[별표 3] 자격증 등의 등급별 가산점 (제23조 관련)

1.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성적확인서

외국어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성적	평정점
영어	토플 530점(CBT197점), 토익 700점, 텡스 625점 이상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60점 이상 그 밖에 임용권자가 별도로 정하는 어학능력 검정성적 이상	0.25
그 밖의 외국어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60점 이상 그 밖에 임용권자가 별도로 정하는 어학능력 검정성적 이상	0.25

※ 비고: 임용권자는 외국어능력시험 성적 만점(0.25점) 범위에서 점수대별로 평정점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2. 그 밖의 자격증

구분	평정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5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25

6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지원제도 개선

예시

[□□군 지방공무원의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5. ~ 7. (생략)

1 문제점

- 종전에는 장학생이 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2명의 연대보증인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장학생이 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연대보증인의 재정보증서를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 개정되었는데(2019. 5. 21. 공포·시행), 해당 규칙에서는 이러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

2 개선방안

- 연대보증인의 재정보증서를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관련법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4조(장학생의 지원) ①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재적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서에는 2명의 연대보증인의 재정보증서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해야 한다.

 종전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9. 5. 21.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4조(장학생의 지원) ①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재적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서에는 2인의 연대보증인의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지방보조사업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예시

[□□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신고인 등의 신고 또는 고발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법률관계가 확정되어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감액·반환·환수 처분 등 흥천군 재정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 기준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 등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며 1억원 이하로 한다.

1 문제점

- 종전 「지방재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521호) 제37조의7제2항에서는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범위를 1억원 이하로 하던 것을 “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는데(2018. 12. 31. 공포, 2019. 1. 1. 시행), 해당 규칙에서는 이러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

2 개선방안

- 포상금의 범위를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7(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법 제32조의8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 명령 후에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2억원 이하로 한다.

③ 법 제32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중전 「지방재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2018. 12. 31.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37조의7(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법 제32조의8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 명령 후에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1억원 이하로 한다.

③ · ④ (생략)

8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촉규정 개선

예시

[□□구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구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해당심사분야와 관련된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 해당심사분야와 관련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
 6.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생략)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 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1 문제점

-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취지와 다르게 일반 공사 분야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이 확대되거나 소수 특정업체에만 유리하게 활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공사 분야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2016. 9. 13. 공포·시행), 해당 규칙에서는 여전히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촉규정을 정하고 있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

2 개선방안

-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따라 공사 관련 내용은 삭제하는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촉 규정 정비



관련자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91호, 2016. 9. 13. 공포·시행)

◆개정이유◆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취지와 다르게 일반 공사 분야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이 확대되거나 소수 특정업체에만 유리하게 활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공사 분야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생략)

◆주요내용◆

가. 공사 분야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폐지(현행 제15조제2항, 제43조제5항·제12항·제13항 및 제96조제1항 단서 삭제, 제15조제6항 및 제43조제1항·제8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는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나 일반 공사까지 확대되거나 소수 특정업체만 유리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공사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폐지함. (생략).



종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899호, 2016. 9. 13.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5조(공사의 입찰) ① ~ ⑤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 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 총액을 적게 하되,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2.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설계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⑦ ~ ⑨ (생략)

9 정책실명제 운영 규정 개선

예시

[□□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구 정책수행자의 실명을 구민에게 공표하고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문제점

- 종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제63조의5 제2항에서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하여 일부개정(2017. 12. 29. 공포, 2018. 6. 30. 시행)되면서, 같은 항 중 “조례 또는 규칙으로”를 “조례로” 변경하였는데, 해당 규칙은 이러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

2 개선방안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이 아닌 조례로 정하도록 개선

**관련법령****「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종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12. 29. 타법개정 되기 전의 것)**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0 지방공무원 징계의결 등 면제 사유 개선

예시

[□□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 기준 및 “별표 1의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3”징계부가금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문제점

-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등으로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개정되었음(2018. 7. 30. 공포·시행).

- 또한, 종전에는 징계 등 혐의자가 적극행정으로 징계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 중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받기 위해서는 징계 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해당 직무 수행 절차상 검토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검토했을 것,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했으나, 앞으로는 징계 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적극행정 면책을 보다 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개정되었음(2019. 6. 25. 공포·시행).

2 개선방안

-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면제 기준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되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거나, 규정하는 경우에도 상위법령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개선



관련법령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비위행위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비위 행위의 제안·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 삭 제

제2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3. 삭 제

4. 삭 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징계등 혐의자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하며, 이하 “시·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인 경우: 감사원,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의 감사기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소속 시·도의 감사기구

2. 징계등 혐의자가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 감사원, 행정안전부의 감사기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해당 시·군·자치구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감사기구 또는 소속 시·군·자치구의 감사기구

④ 인사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자치부령 제107호, 2018. 7. 30.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누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 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원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비위행위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비위 행위의 제안·추천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제111호, 2019. 6. 25.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2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해당 직무 수행 절차상 검토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보고 절차를 거쳤을 것
- ③ 인사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도로점용허가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개선

예시

[□□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적용)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는 도로점용에 관한 과징금 중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118조 및 제119조에 의한 과태료와 범칙금의 부과 대상을 제외하고는 도로를 무단 점유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과태료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에 있어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제곱 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절사한다.

제4조(의견청취)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 처분 등의 통지)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징수결정 즉시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을 명시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분통지서를 발부하고 동시에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통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의 납부기한) 구청장이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7일 이내의 기간 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1 문제점

-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2호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해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이 경우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가 아닌 해당 규칙에서는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또한, 개별 법령에서 통일되지 못하고 있던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어(2007. 12. 21. 제정, 2008. 6. 22. 시행) 같은 법 제5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이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대해서 규정할 필요가 없는데, 해당 규칙에서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및 과태료 처분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2 개선방안

- 「도로법」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개선. 또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되므로 해당 규칙에서 관련 내용 삭제

 **관련법령**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 2.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3. 제77조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요구 금지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1.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 3.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 4.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 5.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 6.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 7.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③ ~ ⑥ (생략)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 가목·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공유재산 관련 감정평가 업무 주체 개선

예시

[□□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하는 사람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③ (생략)

④ 불용품을 처분할 때에는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문제점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에 따른 손실보상액의 산정, 일반재산의 매각·교환 등을 위한 감정평가 등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할 수 있었던 것을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8조제2항, 제2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제1호 등)이 개정되었으나(2015. 2. 16. 공포·시행), 해당 규칙에서는 이러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

2 개선방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2.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이식(移植)에 필요한 경비
3.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이식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감정평가업자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④ 재산가격이 1천만원(특별시,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결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건물의 가격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2.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그린 도면
3. 그 밖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매매 사례 등 관계 서류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해당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⑦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매매·교환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신청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2. 주택: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 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 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③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격에 그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절한 비율(이하 이 항에서 “입체이용 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유재산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 그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 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⑦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와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해당 시·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⑧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대부료의 최고한도로 할 수 있다.

제52조의8(지식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지식재산 존속기간 중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추정 총액
2.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 ③ 제1항의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한 지식재산의 매매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하며, 유사한 지식재산의 매매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 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① 불용품을 일반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 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입찰로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 ③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아니한 불용품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2.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불용품과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해당 불용품을 사려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쉽게 매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다.

13 교육환경보호구역 명칭 개선

예시

[□□군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군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경계선 안
2.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에는 경계선 안
3.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 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의 경우에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4. 버스정류소의 경우에는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
5. 가스충전소, 가스판매업소 및 주유소의 경우에는 표지판에 표시된 경계선 안

1 문제점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및 보호구역 내의 금지행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맞추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등 학교의 환경위생 정화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보건법」이 개정(2016. 2. 3. 시행, 2017. 2. 4. 시행)되었고, 종전 「학교보건법」상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2 개선방안

-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지정 근거 및 명칭 명확화

 관련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 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설립계획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3.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학교보건법」(법률 제13879호, 2016. 2. 3.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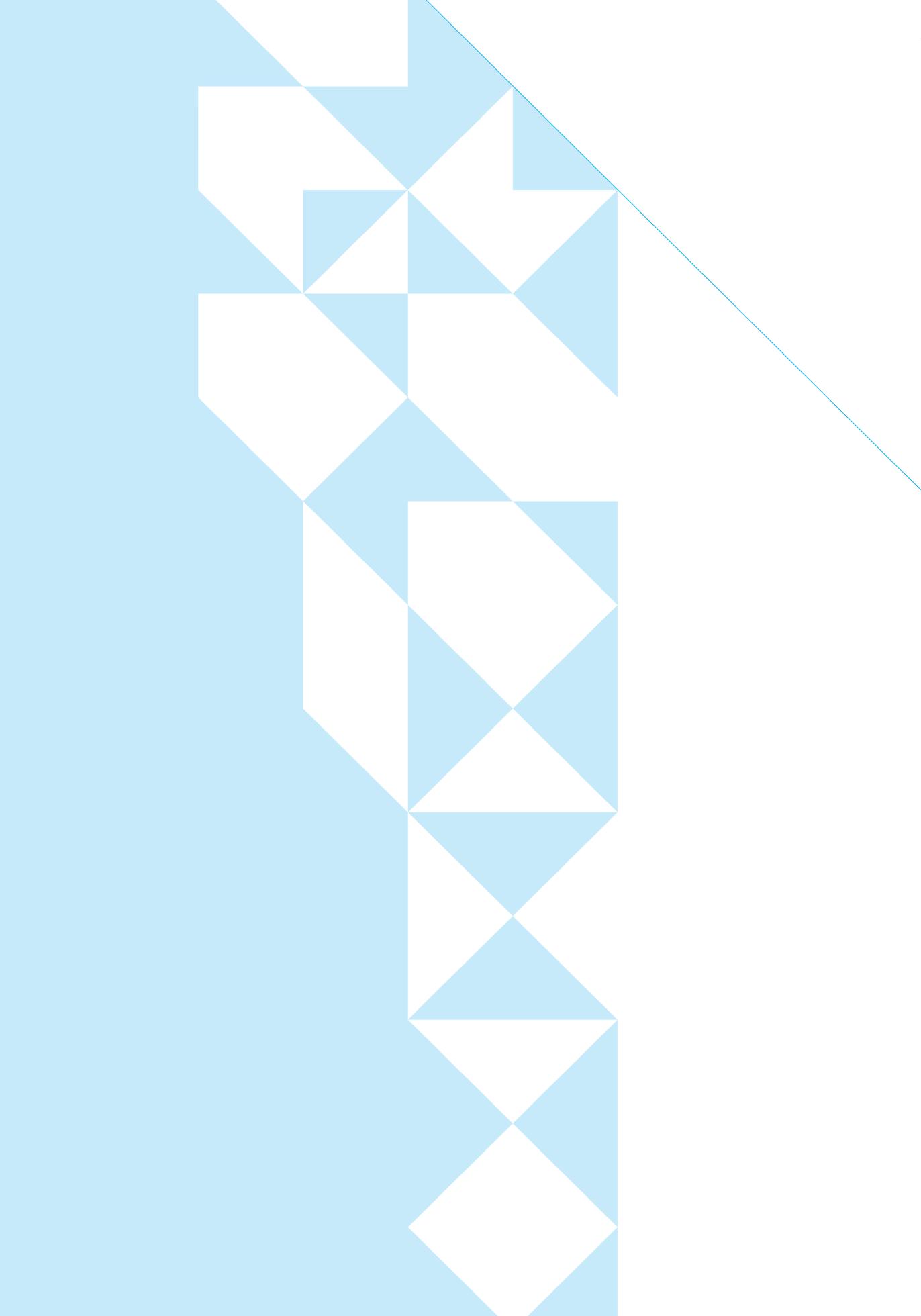
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 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때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3. 유치원이나 특수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중전 「학교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57호, 2017. 2. 3.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 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 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화구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알리고, 그 설정일자 및 설정구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화구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게시판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정화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정화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부록



1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소개



2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소개



3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 소개



4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부록 1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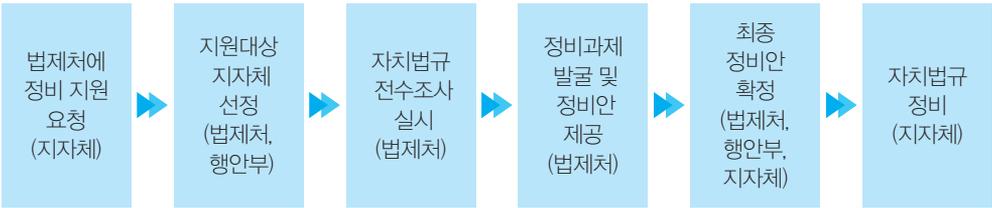
1.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개념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정비하려고 할 때, 정비사항 발굴 및 정비안 마련 등 관련 지원을 법제처에 요청하면, 이를 지원(2014년부터 시행)
 -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하여,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정비과제에 대한 정비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공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제처에서 제공한 정비안을 바탕으로 정비 추진

※ 자치법규 정비과제 발굴 유형 분류

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② 상위법령 위반 소지(위임범위 일탈, 상위법령과 불일치 등 포함), ③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사항) 신설 ④ 자치법규 입안원칙 위반 ⑤ 기타(인용 조문 오류 등) 등으로 분류하여 정비과제 발굴

2.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체계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소개

1.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개념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입안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위법 위반 여부, 입법기술, 자치법규 자체의 해석상 의문에 대해 법제처에 의견을 요청하면 법제처에서 검토의견(자문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2.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 교육감 및 지방의회 의장이 의견제시를 요청
 -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산하기관(예: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은 직접 요청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관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통해 요청
 - ※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의견제시 요청 불가

3.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방법

-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를 작성하여 온나라 공문으로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로 제출 (044-200-6761)
-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 양식은 아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음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해석정보 / 자치법규 의견제시 안내 / 의견제시 요청서
 -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 / 자치입법지원 / 의견제시 요청 / 의견제시 요청서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

➤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건에 관한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여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요건 체크 사항	체크	세부내용	
1.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권한이 있는가? * 자치법규 의견제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지방의회(지방의회 의장 명외)만 요청할 수 있고, 보건소, 상수도사업본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 지역교육청 및 지방의회 의원 개인 명의로는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	✓
		교육감	
		지방의회 의장	
2. 자치법규(조례, 규칙)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인가?	●	조례	
		규칙	✓
3. 의견제시 요청 대상 자치법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가? *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해서는(반대 경우 포함)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4. 의견제시 요청대상 자치법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의 조례안이거나 공포되기 전의 규칙안인가? *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재의요구된 경우를 포함)나 공포된 규칙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입안중	
		입법예고중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심의중	✓
		지방의회 제출	
		지방의회 의결	
		조례·규칙 공포	
5.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이 특정되어 있는가? * 의견제시 요청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조례안 전체에 대한 상위법 위반 여부 등과 같이 질의하거나 질의사항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		
6. 자치법규 해석요청인 경우에는 현행 자치법규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나 구체적인 사실 인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해당 자치법규의 일반적 해석에 관한 요청인가? * 의견제시 요청시 현행 자치법규의 상위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이거나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또는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		

1. 질의요지

- 질의요지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며, 질의요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 나 등으로 나누어 작성합니다.

2.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조문 및 관련 법령

- 의견제시 대상이 되는 자치법규의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을 적습니다.

3. 대립되는 의견

- 가. 갑설
- 나. 을설

4. 요청기관 및 관계기관의 의견

- 의견제시 요청대상에 대해 요청기관의 의견을 적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적습니다.

5. 참고자료

-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률자문결과 등 관련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첨부'로 적고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부록 3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 소개

1.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 개념 등

◆ 법제처의 70년 법령심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자체 법제부서의 자치법규 심사를 지원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 및 지자체 법제부서의 역량 제고 도모

- (개념) 지자체가 자치법규안 또는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면, 법제처는 법리적·법제적 검토의견을 법제처에 제공하고, 지자체는 이를 자치법규 입법 및 심사에 활용하는 제도
- (컨설팅 대상) 조례 제·개정안(제정안, 전부개정안, 일부개정안 모두 포함)
- (컨설팅 내용) 헌법 및 상위법령과의 관계, 위임범위의 일탈 여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의 반영 여부 및 용어·표현·조문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입법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2.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 절차

- 컨설팅을 요청할 조례 제·개정안(집행부 발의)이 입안 또는 입법예고되면,
 - ① (지자체) 법제부서에서는 공문(온나라)으로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에 컨설팅 요청
 - ② (법제처)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 종합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공문(온나라)으로 지자체 법제부서에 회신
 - ③ (지자체) 컨설팅 결과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자체 심사를 실시하고, 자치법규 입법 추진현황(의회제출, 의회의결, 공포 등) 또는 컨설팅 결과 반영 여부를 3개월 이내에 정부입법지원시스템에 등록
- *자치입법권 존중 차원에서, 지자체 법제부서에서는 법제처 컨설팅 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운영

3.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 운영 기간

-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1년 단위로 입법컨설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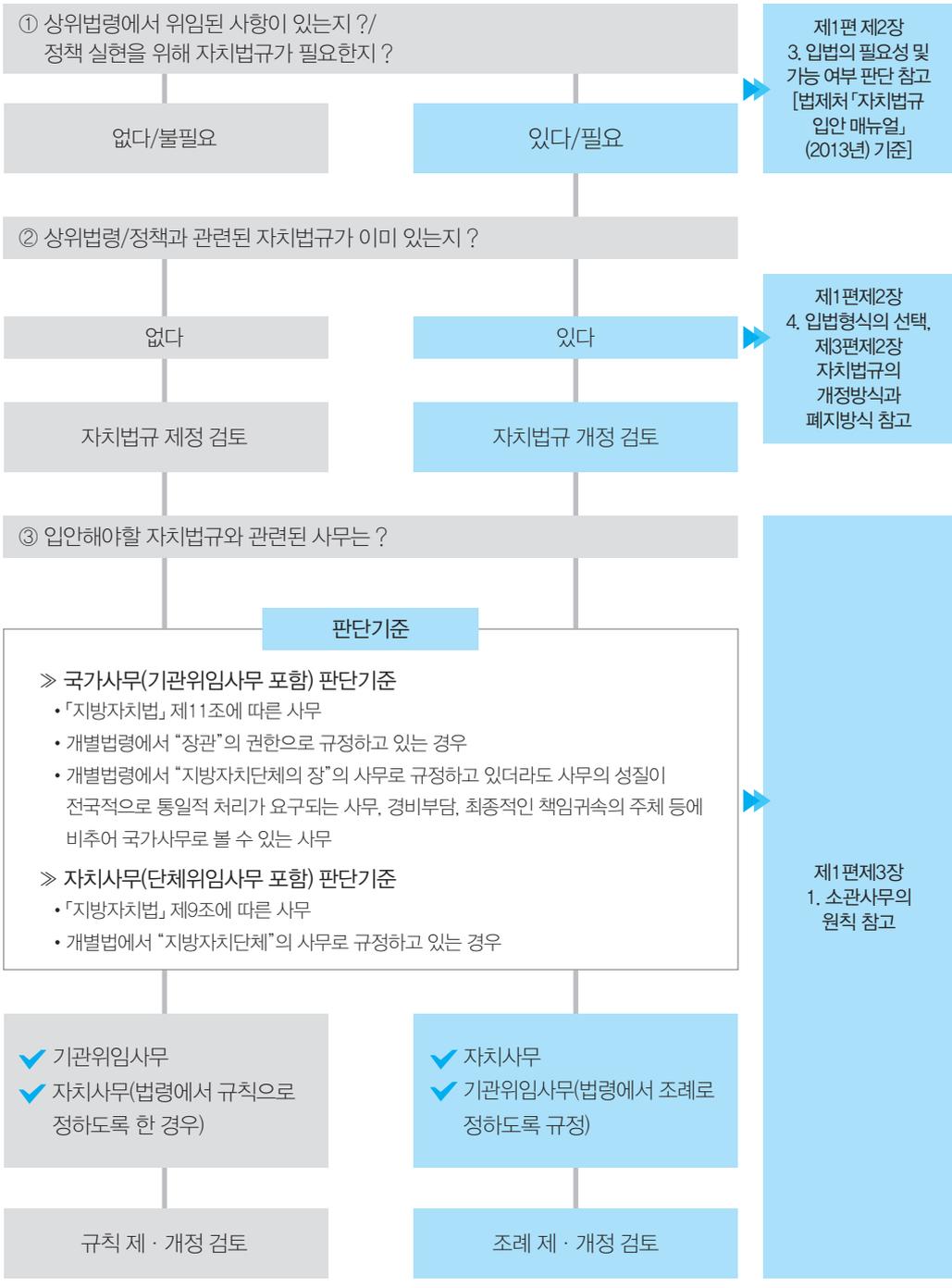
부록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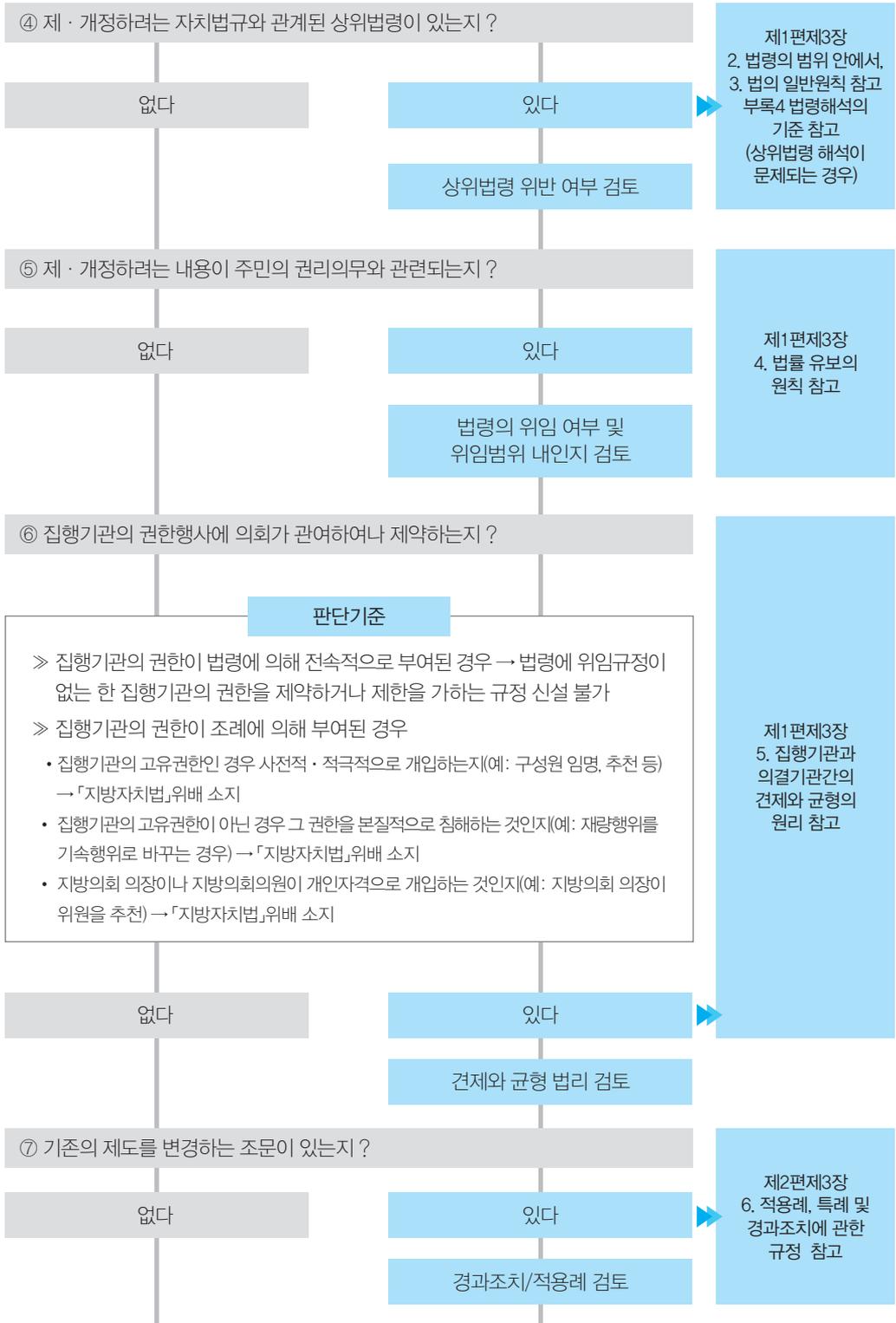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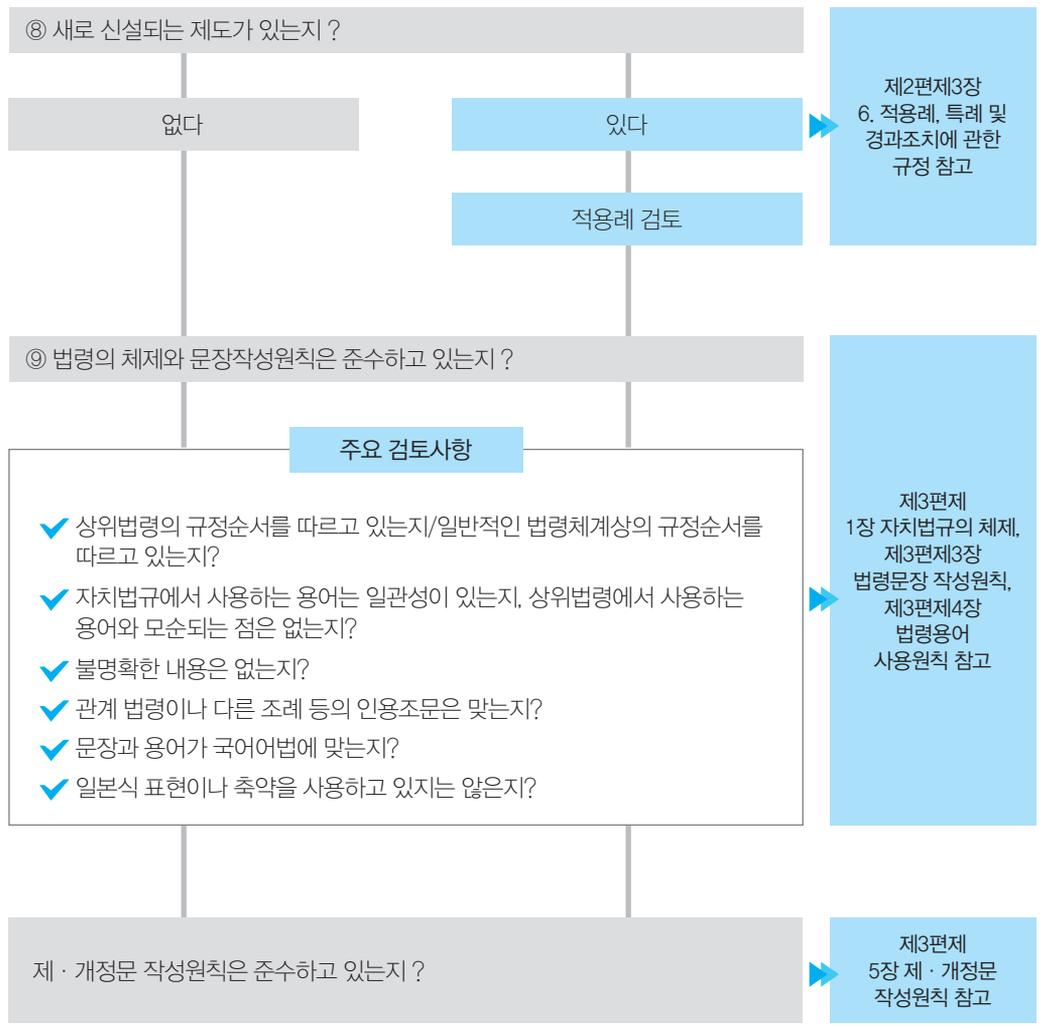
일러두기

자치법규 입안체크리스트는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필수사항과 필수사항을 검토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의 해당 부분을 표시해 둔 것으로,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고려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표시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참조할 수 있는 부분도 직접 관련 부분만 표시해 두었기 때문에 입안분야별 세부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세부기준입안기준 등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MEMO

「 2019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례집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발행처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7-1동)
전화 044-200-6748
팩스 044-200-6972
발행일 2019. 12

